##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회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35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3.

발 의 자:김회재・진선미・허 영

박영순 · 강준현 · 김수흥

송재호・윤준병・임호선

신정훈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 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등 공제사업을 수행하며 불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일을 방지하고자,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명령, 조사·검사 등을 통한 감독과함께 임직원 징계요구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공제금 지급이나 피해자 손해사정 등과 관련된 당사자 사이 분쟁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,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및 제재업무 수행을 위 한 요건,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사업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, 현행법 에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수 집 및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그 감독 및 제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,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51조의7제4항, 제64 조제1항 및 제2항). 법률 제 호

##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의7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감독 및 제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제6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"한국교통안전공단"을 각각 "한국교통안전공단,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른 자동차손해배 상진흥원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51조의7(보고서의 제출 명령	제51조의7(보고서의 제출 명령	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
<u>&lt;신 설&gt;</u>	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의	
	6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	
	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	
	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	
	하여 그 감독 및 제재에 필요	
	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	
	<u>여야 한다.</u>	
제64조(권한의 위탁 등) ① 국토	제64조(권한의 위탁 등) ①	
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		
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		
대통령령 또는 시·도의 조례로		
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·연합회,		
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		
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	한국교통안전공단, 「자동	
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	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른	
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	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	
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		
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		
승인을 받아야 한다.		
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	②	
무에 종사하는 협회·연합회,		

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<u></u> 한국교	통안전공단,	「자동	<u> 등차</u>
<u>손해배상</u>	보장법」에	따른	자
동차손해티	배상진흥원		